

의안번호	제136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5년 2월 23일

# 2015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136호
----------	-------

제출연월일 : 2015. 2.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 발생 및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설립부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및 변경

(단위 : m<sup>2</sup>,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행정과	토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변경)	△4,910	△2,456,500
	건물	가칭)진천유치원 설립원사 신축(변경)	0	62,965
청주교육 지원청	건물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992	2,877,889
	건물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창의융합동)증축	2,767	5,086,602
합계		(4건)	△1,151	5,570,956

## 3.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붙임1)

##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취득합계	4	12,663	21,683,386	4	△1,151	5,570,956	8	11,512	27,254,342	
	계	토지	2	3,921	886,574	1	△4,910	△2,456,500	3	△989	△1,569,926
		건물	2	8,742	20,796,812	3	3,759	8,027,456	5	12,501	28,824,268
		기타									
	1. 매입	토지	2	3,921	886,574	1	△4,910	△2,456,500	3	△989	△1,569,926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2	8,742	20,796,812	3	3,759	8,027,456	5	12,501	28,824,268
		기타									
처분	처분합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득(변경) 사유	취 득 소 유 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 량					
(가칭) 진천 유치원	당 초	토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55-2	△4,910	2014. 하반기	진천상산초 및 삼수초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2014.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교육감	도면1
		건물		△2,696				
	변 경	건물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	2,696	5,411,500	2016. 하반기		
경덕초	건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	992	2,877,889	2016. 하반기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2
충북 과학고	건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	2,767	5,086,602	2016. 상반기	교육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증축 - 조기졸업 비율 대폭 축소: 80%→10%이내	교육감	도면3
합 계			△1,151	5,570,956				

## 1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 ■ 당초계획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설립위치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55-2번지[축협부지]
- 매입부지 : 4,910m<sup>2</sup>
- 건축면적 : 2,696m<sup>2</sup> / 10학급 177명
- 취득금액 : 7,805,035천원(토지 2,456,500천원, 건물 5,348,535천원)
- 사유 : 진천상산초 및 진천삼수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 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 ■ 변경계획

#### ① 사업위치: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번지[신덕초폐교부지]

####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 사업용도: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 사업기간: 2015. 3. ~ 2016. 8.
- 소요예산(총사업비): 5,411,500천원(건축비)
  - 연도별소요액: 2015년도 271,000천원, 2016년도 5,140,500원
  - 재원조달: 국비 5,411,500천원
  - 재원별 사업비: 건축비 5,411,5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동 2층 2,696m<sup>2</sup>
  - 주요(부대)시설: 보통교실, 유희실, 다목적실, 급식실, 관리실 등
- 기준가격: 건축비 5,411,500천원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③ 변경사유: 당초 예정부지가 설립 부적합 의견(인근 장례식장 위치, 인근 맹지 관습도로 개설, 진입로 불편 등)이 대두됨에 따라 대형 버스 진입이 가능하고 넓은 공간의 자연 친화적 유치원 설립 및 부지매입비 절감을 위하여 신덕초폐교로 위치를 변경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함

## ②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① 사업위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번지

###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업용도: 다목적교실
- 사업기간: 2015. 5. ~ 2016. 10.
- 소요예산(총사업비): 2,877,889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5년도 2,877,889천원
  - 재원조달: 국비 2,252,000천원, 기타 625,889천원
  - 재원별 사업비: 건축비 2,877,889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동 2층 992m<sup>2</sup>
  - 주요부대시설:
    - 다목적교실 1실
    - 필로티 992m<sup>2</sup>, 승강기 1식, 연결복도 90m<sup>2</sup>, 포장 1,000m<sup>2</sup> 등
- 기준가격: 건축비 2,877,889천원
- 계약방법: 일반입찰

③ 취득사유: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 ③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창의융합동) 증축

① 사업위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사업용도: 교사동 신축
- 사업기간: 2015. 5. ~ 2016. 6.
- 소요예산(총사업비): 5,086,602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5년도 5,086,602천원,
  - 재원조달: 지방비 5,086,602천원
  - 재원별 사업비: 건축비 5,086,602천원

- 사업규모
    - 건물 1동 4층 2,767㎡
    - 주요부시설
      - 1층 주차장 711㎡, 2층 교실 및 특별교실 8실, 3층 특별교실 8실, 4층 특별교실 8실
  - 기준가격: 건축비 5,086,602천원
  - 계약방법: 일반입찰
- ③ 취득사유: 교육여건 변화(조기졸업 비율 대폭 축소: 80%→10%이내)로 인한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증축

# 도면 1 :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당초	토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55-2	4,910	2,456,500	당초 예정부지가 설립 부적합 의견에 따라 신덕초폐교로 설립 부지 변경 - 인근 장례식장 위치, 진입로 불편, 사유건물 진입로 문제 등 - 자연 친화적 유치원 설립
		건물			2,696	5,348,535	
	변경	건물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	2,696	5,411,500	
계				△4,910	△2,393,535		

당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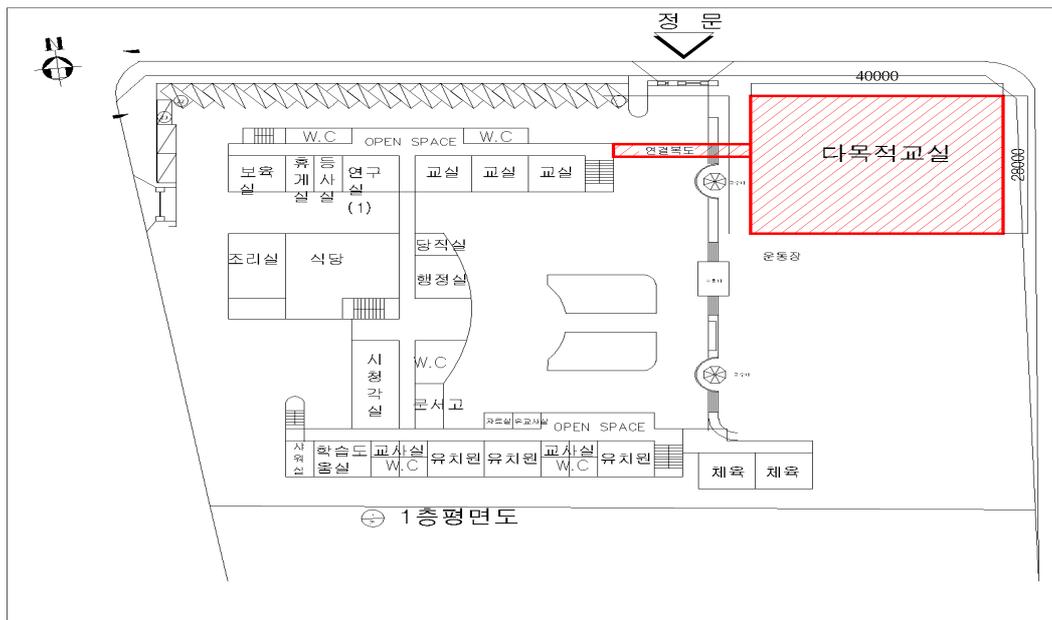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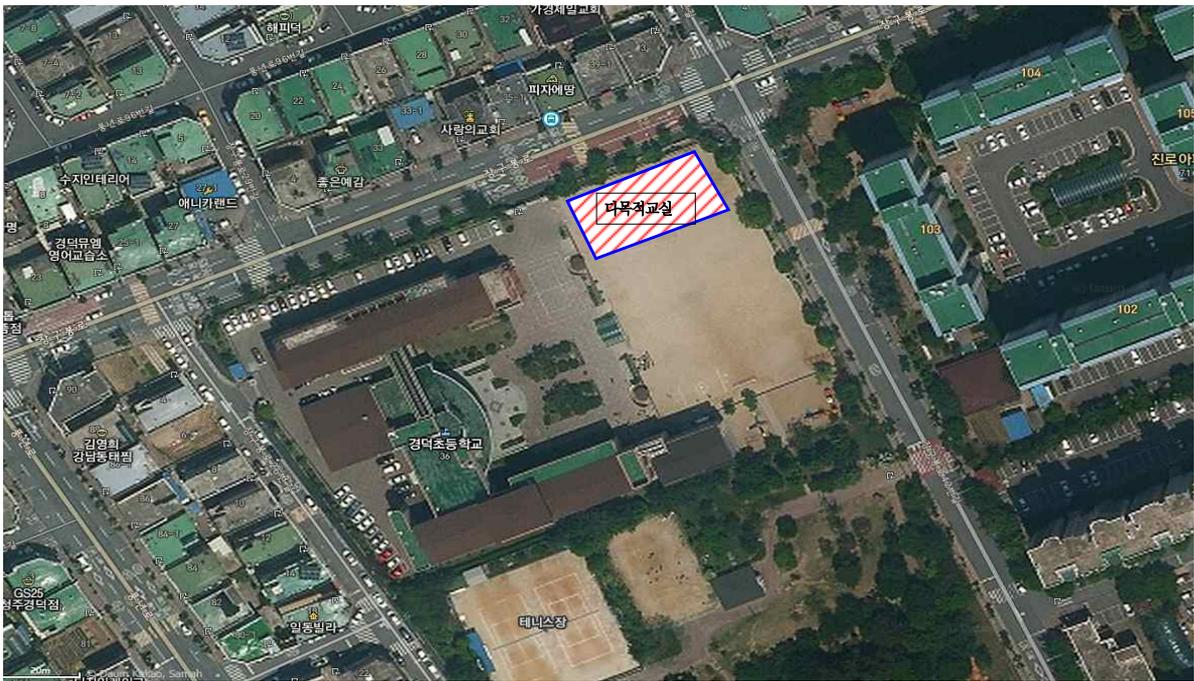


변  
경



## 도면 2 :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경덕초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	철근콘 크리트	992	2,877,889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					992	2,877,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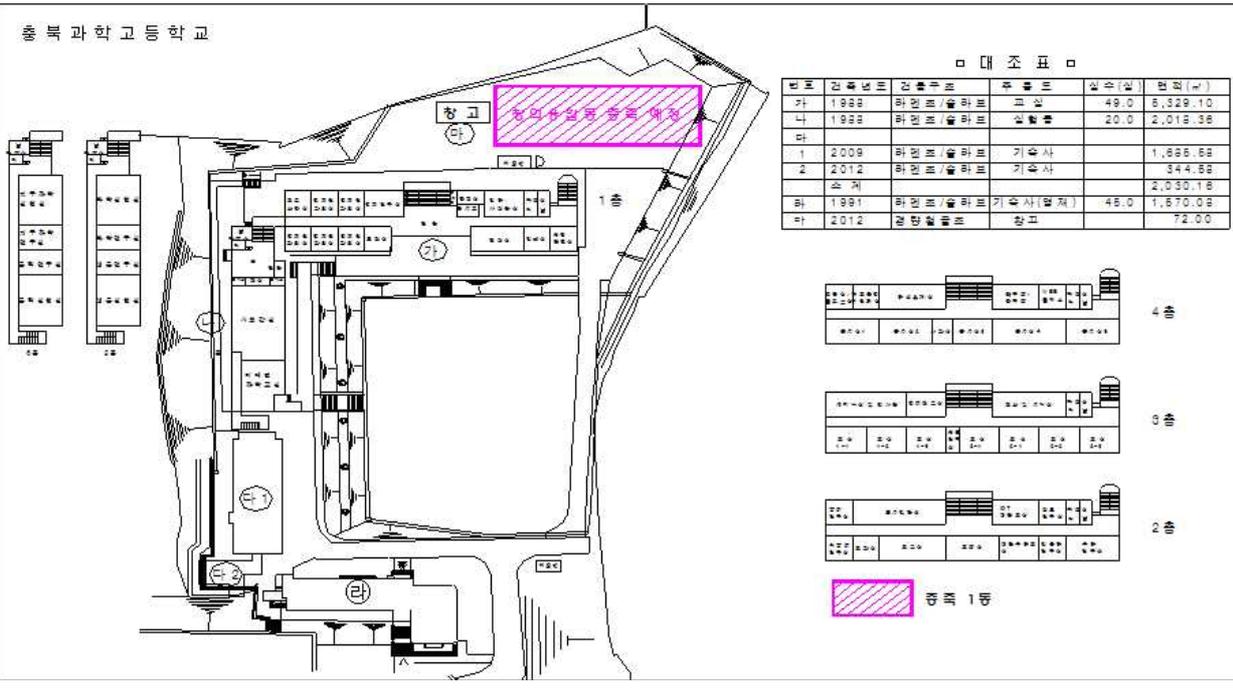


### 도면 3 :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과학고 교사동증축	건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	철근콘크리트	2,767	5,086,602	교육여건 변화(조기졸업 비율 대폭 축소: 80%→10%이내)로 인한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증축
계					2,767	5,086,602	



충북과학고등학교



#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 및 용도</li> <li>2. 사업기간</li> <li>3. 소요예산</li> <li>4. 사업규모</li> <li>5. 기준가격 명세</li> <li>6. 계약방법</li> </ol>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